

전주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25309(본소), 2018가단9496(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8. 9. 11.

판결 선고 2018. 11.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2017.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나. 원고(반소피고)는 B에게 전주시청 2017. 9. 20. 접수 제52394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전주시청2016. 2. 26. 접수 제1622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B는 2016. 2.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신규 등록을 마쳤다.
- 2) B는 이 사건 자동차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2. 2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대출원금 30,870,000원, 대출기간 2016. 4. 8.부터 2022. 3. 14.까지, 월 불입액 520,390원, 이자율 연 6.6%,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한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6.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전주시청 접수 제162272호로 채권최고액 6,174,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 3) B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20. 남편이었던 C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시청 접수 제52394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쳐 주었다.
- 4)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 5) 원고는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649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174,00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 대하여 약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최고액 6,174,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금원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에 해당한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악의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B의 남편이었던 C과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인 점, 원고는 피고와 같은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대출금액의 일부만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악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에 기초한 다른 할부금융회사와의 자동차할부 대출계약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그 피담보채무 6,174,000원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